전 라 남 도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2-046호 수렵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 10. 청구인에게 한 수렵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2. 5. 30.

전 라 남 도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인

이 유

【제2022-046호, 수렵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의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21. 12. 2. 14:00경 멧돼지 피해 민원신고를 접수받아 ○○군 ○○면 ○○리 산○번지 일대에서 포획 활동 중 인근 임야에 방목 중인 흑염소 2마리가 청구인 소유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1. 10. 수렵면허 정지(3개월, 2022. 1. 10 ~ 2022. 4. 9.)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2. 1. 10. 청구인에게 한 수렵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2021. 12. 2. 14:00경 ○○군 ○○면 ○○리 산○번지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인근 임야에 방목 중인 흑염소 2마리가 청구인 소유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수렵 보험

회사에 접수 처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렵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원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는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렵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았다.

3) 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의하면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1]의 "수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수렵"은 동물 등에 대한 사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4장[2]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행위로서의 "수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에서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서의 "수렵"역시 같은 법 제4장 제42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수렵"의 의미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며,

해당 규정이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침익적 규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유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바, 같은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수렵"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

1)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야생생물법 제4장에서는, 누구든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2조),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수렵기간·수렵도구·수렵방법 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와 수렵승인을 받고(제44조, 제50조), 수렵보험에 가입하며(제51조),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에는 수렵이 제한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된다(제55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는 수렵과는 달리 포획장소와 포획시간도 제한되지 않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라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수렵활동으로서의 수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사고 발생에 관하여

① 피청구인은 매년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왔으며, 2021년에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성·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였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기획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로서 2021. 12. 2. 14:00경 순찰 포획활동을 하였는바 ○○군 ○○면 ○○리 산○번지 일원에서 멧돼지 피해 민원신고를 접수받아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포획 활동 중이었으며,

당시 위 산 ○번지 인근의 임야에 무단으로 방목한 염소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의 사냥개 2마리가 짖다가 도망가던 흑염소 2마리를 물자 즉시 사냥개 2마리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더 이상 흑염소를 물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직후 청구인이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흑염소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총 8마리 흑염소가 있었는데, 그 중 2마리가 부상당한 것을 확인하고 비닐하우스 푯말에 쓰여진 연락처를 통해 흑염소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민사상 손해가 있을 경우 수렵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상하겠다고 주인에게 사과하였다.

그런데, 흑염소 주인은 보험회사의 적정한 보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5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되지 않았고, 위 흑염소 주인이

피청구인과 ○○경찰서에 막무가내의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예측 불가 및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5) 청구인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은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수렵”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① 법제처의 해석처럼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에서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수렵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서의 “수렵”역시 같은 법 제4장 제42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의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수렵”의 의미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며, 해당 규정이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침익적 규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유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바, 같은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수렵”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는 포획장소와 포획시간도 제한되지 않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라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수렵활동으로서의 “수렵”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바,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법제처 유권해석의 기속력에 관하여

①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하며,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

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②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7) 청구인이 소유한 사냥개의 공격적 성향에 대비한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 소유의 사냥개는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을 공격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타인 소유 재물에 피해를 입힌 사실조차 없었는바, 사냥개의 공격성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지나친 비약이다.

또한 청구인 소유 사냥개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위해 탐지하거나 함에 있어 반드시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러울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포획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다.

8)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기획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로서 멧돼지 포획활동을 하였을뿐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수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렵”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2022. 1. 10.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수렵면허 정지(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기동포획단이 포획 활동 중 사냥

개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피해 사고로,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군이 재량으로 하는 최선의 조치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정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기동포획단으로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수렵”에 해당하지 않아 “수렵 중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과 환경부 유권해석 등을 제출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생물법에 근거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21. 1. 21.)」에 의하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 활동 중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만 특정하고 있어 이는 야생생물법의 ”수렵“행위를 ”포획활동“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청구인이 포획 활동 시 자신이 소유한 사냥개의 공격적 성향에 대비한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인근에서 방목 중인 흑염소 죽음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명백한 피해 사실 및 농장주(최○○)가 지난 2021. 12. 29. 피청구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천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청구인에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유발시켰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렵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의성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어 과실로 판단하여 수렵면허 정지(3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재량 행위에 대한 정당성 등 피청구인의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공익적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한 처분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보충서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을 통해 지침안 등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적 기속력'은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은 야생생물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2) 야생생물법 제23조 제1항~제9항, 같은법 제49조 제1항 제3호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21. 1. 21.)

4) 2021년 ○○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성·운영 계획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1년 피청구인 소속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 청구인이 2021. 12. 2. 멧돼지 피해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군 ○○면 ○○리 산 ○번지 일대에서 포획활동 중 인근 임야에 방목중인 흑

염소 2마리가 청구인 소유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 10.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따라 수렵면허 정지 3개월(2022. 1. 10. ~ 2022. 4. 9.)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7. 28.]

제4장 수렵 관리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7. 28.]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0조(수렵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④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1. 7. 28.]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2. 3.>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전문개정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 2020. 5. 27. 개정]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거.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가)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면허취소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판 단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한 행위가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제3호(수렵중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나)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해당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는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다) 또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등 참조) “수렵”은 동물 등에 대한 사냥으로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4장(수렵 관리)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행위로서의 “수렵”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렵장”이라는 장소의 제한이나 수렵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행위는 “수렵”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서의 “수렵” 또한 야생생물법 제4장에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렵”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법에서 쓰인 “수렵”이라는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처벌 조항에서 이를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법령 해석에 관한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